

☎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33/전송(02)796-4487
보험정책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임주연 [653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12501

시행일자 2021. 1. 8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(정부)에 대한 의견조회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일부개정법률안 및 「보험업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.

3. 이에 우리 협회는 동 법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우리 협회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업무를 추진할 예정인바,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요청사항

-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보건복지부)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금융위원회)에 대한 의견

나. 법안 주요내용 (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내용 동일함)

1)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

- 공·사보험 연계·관리 및 정책의 종합·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, 현황

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2)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근거 마련

-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, 제출받은 자료를 관련 정책업무에 활용 가능함을 규정

3) 관련 정보 보안 유지를 위한 근거 규정

- 정보의 유지 의무대상에 연계위원회 및 관련 업무 위탁을 받은자를 포함
※ 위반시 벌칙조항 적용

다. 제출기한 : 2021. 1. 22.(금)

라. 제출처 :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보험팀(E-mail : kma6350@naver.com)

붙임 : 1.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(안) 1부.
2.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16개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협의회, 대한전공의협의회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 민 건 강 보 험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,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공·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(이하 ‘연계위원회’)를 구성·운영하는 등 정책의 종합·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이를 위해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및 제출받은 자료의 관련 정책업무 활용이 가능함을 규정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보험업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. 7. ~ 2. 16.)

3) 규제심사 : 사전규제심사결과 규제없음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의2(제90조의2 및 제90조의3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의2 민간의료보험과의 연계관리

- 제90조의2(민간의료보험과의 연계관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으로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상품(이하 “실손의료보험”이라 한다.)이 서로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정책의 종합·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·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(이하 “연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, 시기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연계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심의 대상·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0조의3(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기관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, 보험협회,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 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정보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, 「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, 「의료법」에 따른 진료 정보는 연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”를 “심사평가원, 대행청구단체 및 연계위원회(위임·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제7장의2 민간의료보험과의</u> <u>연계관리</u> <u>제90조의2(민간의료보험과의 연</u> <u>계관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</u> <u>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</u> <u>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</u> <u>이바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</u> <u>「보험업법」 제2조제1호 다목</u> <u>에 따른 제3보험상품으로서 실</u> <u>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</u> <u>형태의 보험상품(이하 “실손의</u> <u>료보험”이라 한다.)이 서로 연계</u> <u>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위</u> <u>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정책의</u> <u>종합·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</u> <u>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과 실</u> <u>손의료보험의 연계와 관리를 위</u> <u>하여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</u> <u>공동 소속으로 공·사의료보험</u> <u>연계심의위원회(이하 “연계위</u> <u>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 <u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</u> <u>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</u>

<신 설>

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, 시기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연계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심의 대상·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0조의3(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기관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, 보험협회,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 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

에 관한 정보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, 「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, 「의료법」에 따른 진료 정보는 연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2조(정보의 유지 등) 공단,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

제102조(정보의 유지 등) --- 심사평가원, 대행청구단체 및 연계위원회(위임·위탁을 받은 자

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·2. (생략)

를 포함한다)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684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0. 00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,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공·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(이하 '연계위원회')를 구성·운영하는 등 정책의 종합·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이를 위해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및 제출 받은 자료의 관련 정책업무 활용이 가능함을 규정함.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3조의2부터 제193조의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3조의2(건강보험과의 연계관리) ① 금융위원장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(이하 “건강보험”이라 한다)과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으로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상품(이하 “실손의료보험”이라 한다)이 서로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관련 정책의 종합·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공동 소속으로 공·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(이하 “연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 금융위원장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, 시기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에 관한 업무

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연계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심의 대상·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3조의3(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) ① 금융위원장은 제193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기관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, 보험협회,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 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정보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, 「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, 「의료법」에 따른 진료 정보는 연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② 금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193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

제20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193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외의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193조의2(건강보험과의 연계관</u> <u>리) ① 금융위원장은 국민의 의</u> <u>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</u> <u>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</u> <u>하기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</u> <u>법」에 따른 건강보험(이하 “건</u> <u>강보험”이라 한다)과 제2조 제1</u> <u>호 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으</u> <u>로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</u> <u>급하는 보험상품(이하 “실손의</u> <u>료보험”이라 한다)이 서로 연계</u> <u>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복</u> <u>지부와 협력하여 관련 정책의</u> <u>종합·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</u> <u>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과 실</u> <u>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하</u> <u>여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공</u> <u>동 소속으로 공·사의료보험 연</u> <u>계심의위원회(이하 “연계위원</u> <u>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③ 금융위원장은 건강보험과 실</u> <u>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</u> <u>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</u> <u>여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</u></p>

거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, 시기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연계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심의 대상·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193조의3(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) ① 금융위원장은 제193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를 거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기관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, 보험협회,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(이하 이 조에

서 “관계 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정보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, 「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, 「의료법」에 따른 진료정보는 연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② 금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연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료를 면제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

제20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제20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0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제193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
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
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
의 용도로 사용한 자

제202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제193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
개인정보 외의 정보나 자료를 다
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
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
용한 자